

부산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0나6288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0나62884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10. 21 선고 2019가단1143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피고, 피항소인 1. C

2. D

변론종결 2021. 5. 21.

판결선고 2021. 6. 25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10. 21. 선고 2019가단11434 판결

주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,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권현영, 판사 조윤정, 판사 홍준서